

수원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55811(본소), 2022나55965(반소) 판결 [계약금 등
반환청구 · 계약금 등 반환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박상도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김지수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6. 15.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 14. 선고 2021가단73556(본소),

2021가단83324(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04,5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3.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7,150만 원 및 위 돈 중 4,29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9. 2.부터, 2,86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9. 24.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13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2022. 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제1심판결의 본소 중 원고 패소 금액인 33,096,000원의 추가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후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반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하3행의 “또한” 이하부터 제4쪽 4행의 “2) 예비적 청구” 앞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이 사건 기계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포장 필름용지 중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별지2 표 기재 포장 필름용지 재고량 가액 합계 34,137,600원{재고량(공산품용 14,100m + 내수용 70,500m + 홈쇼핑용 17,000m) × 단가 336원/m}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심판결 제5쪽 15행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㉓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㉑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포장한 마스크가 2021. 7.경까지 시중에 판매되었다. ㉒ 원고가 판매용 마스크 포장을 위하여 구입한 포장 필름용지는 2020. 9. 23.부터 2021. 1. 19.까지 총 374롤인데, 현재 재고량은 203롤인바, 그 중 이 사건 기계 가동 중단 이후 구입한 93롤을 빼면, 실제 재고량은 110롤이고, 결국 264롤을 판매용 마스크 포장을 위해 사용한 셈이 되는바, 이는 총 132만 개의 마스크를 포장할 수 있는 양이다. ㉓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홈쇼핑용 마스크 145,000개를 생산하였고, 2021. 1. 19. 홈쇼핑용 포장 필름용지를 구매한 다음 2021. 1. 26. 위

기계 가동을 중단하였던바, 2021. 1. 19.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145,000개(하루 약 24,000개)의 흡소핑용 마스크를 생산한 셈이 되고, 이는 위 기계를 정상적인 속도(시간당 4,200~4,800개)로 가동한 경우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우선 을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2021. 7.경까지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였다거나 위 기계로 총 132만 개의 마스크를 포장하였다는 점 또는 2021. 1. 19.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흡소핑용 마스크 145,000개를 포장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 취지는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 당시의 견적서에서 보장하는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불량률이 높고 수리를 위하여 장기간 가동할 수 없는 등 위 기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설령 원고가 2020. 9. 11.부터 2021. 1. 26.까지 941,650개의 마스크를 포장하였다3) 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기계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의 본래 목적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원고의 2021. 8. 3.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가동하여 총 1,339,500개의 마스크를 생산하였고 2020. 12. 이전에는 마스크를 생산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는 2020. 12. 9. 비로소 마스크 생산을 위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았으므로, 결국 원고는 2020. 12. 9.부터 이 사건 기계 가동을 중단한 2021. 1. 26.까지 위 수량을 생산한 셈이 되고, 이는 매일 8시간씩 33일간 작업 시 생산 가능한 최대 수량인 1,267,200개(4,800개 × 8시간 × 33일)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위 기계의 하자는 원고가 정상 가동 속도보다 높은 속도로, 충분한 정비 시간 없이 가동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기계의 하자가 원고의 사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계의 하자, 그 중 특히 우측면 파열, 구멍 위치 불량, 상하 절단 불량, 측면 쓸림 불량, 진입 불량 등 하자는 설계 당시부터 내재된 설계상의 문제이거나, 적어도 사용자가 조정할 수 없는 문제인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 제1심판결 제5쪽 하4행의 “위 돈을 받은 날인”부터 제6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돈을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앞의 각주1), 2)에서 본 바와 같이 2021. 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이다. 우선, 민법 제549조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인 피고의 위 돈 반환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기계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원고가 위 기계 반환의무에 관하여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위 돈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돈에 대하여 그 받은 날 이후부터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위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어 선 원고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6쪽 2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또한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특별손해는 그것을 주장하는 자에게 상대방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64. 6. 9. 선고 63다10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0, 15, 16, 19 내지 21, 23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재고 포장 필름용지 구입비용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자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벗어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20. 8. 31.부터 2021. 1. 26.까지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포장 필름용지를 구매하였고, 2022. 6. 13. 기준 포장 필름용지의 재고량은 별지 표2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은 2020. 9.경부터 지속적으로 위 기계의 하자를 주장하여 오다가 2021. 1. 25.경4) 위 기계를 대신할 수동 포장기계 1대를 구입하였고 2021. 1. 26.경 일응 이 사건 기계의 가동을 중단하였음에도 2021. 1. 19.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계속하여 포장 필름용지를 구입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2021. 3. 2.까지 홈쇼핑 업체에 납품하여야 했고 그 밖에도 계약된 물량을 맞추기 위하여 위 기계를 대신할 수동 포장기계 2대를 구입하여 가동한 2021. 2. 3.경과 같은 달 17경까지 이 사건 기계를 계속하여 가동하였고 이를 위해 포장 필름용지를 구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원고는 2021. 1. 19. 홈쇼핑용 포장 필름용지 70롤을 최초 주문하였고, 같은 달 26일 내수용 포장 필름용지 93롤을 추가 주문하였다. 결국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 즉 이 사건 기계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 기계를 계속하여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포장 필름용지를 계속하여 구입하였던 것인 이상, 위 재고 포장 필름용지 구입비용, 그 중 적어도 2021. 1. 19.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구입한 위 각 포장 필름용지 구입비용을 이 사건 기계의 하자 자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한편 원고는 위 재고 포장 필름용지를 사용하여 수동 포장 파우치로 가공하여 재사용하는 것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위 재고 포장 필름용지에는 내용물에 대한 설명이 인쇄되어 있는데, 원고는 2021. 2.경 이 사건 기계 가동을 중단한 이후 공산품 마스크의 생산을 중단하였고, 내수용 및 흡소핑용 마스크의 경우 일부 재질이 변경되어 위 재고 포장 필름용지에 인쇄되어 있는 내용물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는바, 그로 인하여 위 재고 필름용지를 재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이다. 그로 인한 손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보기 어렵고,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및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모두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의 항소 및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장지혜, 판사 이영범, 판사 이형석

별지1

포장 필름용지 구입현황 표5)

번호	입고일	품명	수량	단위	비고
1	20/8/31		6	롤	8월28일 []으로 전달
2	20/9/23		45	롤	두께 87마이크론
			1	롤	
			45	롤	
			1	롤	
3	20/10/29		11	롤	
4	20/12/4		1	롤	
			22	롤	
			1	롤	
5	20/12/17		80	롤	
			1	롤	
			1	롤	
			89	롤	
6	21/1/13		2	롤	
			3	롤	
			1	롤	
			69	롤	
7	21/1/19		1	롤	
8	21/1/27		92	롤	
			1	롤	

5) 갑19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순번 8의 입고일은 '2021. 1. 26.'의 오기이다.

별지2

포장 필름용지 재고량 표(2022. 6. 13. 기준)

품명	물수 (롤)	재고량 (M)	비고
KF80 공산품	28	14,100	평균 길이: 500 m/롤
KF94 내수	141	70,500	
KF94 흡소필름	34	17,000	
계	203	101,600	

1) 각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 2. 3.의 오기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기 지급된 계약금의 원상회복 및 그 밖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2020. 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는 부대청구의 청구원인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설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산일인 '2020. 2. 3.'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그 기산일 산정의 원인 역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20. 5. 25. 체결되었고, 계약금은 2020. 6. 2. 지급되었던바, 2020. 5. 25.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계약 체결일자 이전으로 지정하여 청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위 기산일자가 오기라는 점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는 소장에서 '2021. 2. 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기 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21. 2.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던바, 위 기산일 '2020. 2. 3.'은 '2021. 2. 3.'의 오기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2023. 5. 12.자 참고서면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였다.

4) 갑1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계 구입과 관련하여 2021. 1. 25.자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